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7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및 비율 확대〉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55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및 비율 확대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0.
3. 회부연월일 : 2025. 8.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 역시 법률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비율 역시 기금운용자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및 비율 확대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을 기존 44개에서 67개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 ----- ----- -----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최근 벤처펀드 결성 실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2021년 17조 8,481억원에서 2024년 10조 5,550억원으로 40.9% 줄었고, 결성 펀드 수는 2021년 1,198개에서 2024년 811개로 32.3% 감소하였음.

2020~2024년 벤처펀드 결성 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결성금액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벤처투자조합	68,645	95,490	110,634	68,031	57,571	△15.4%
산기술사업투자조합	31,214	82,991	65,767	62,297	47,979	△23.0%
결성펀드 수	650	1,198	902	859	811	△5.6%
벤처투자조합	206	404	380	290	286	△1.4%
산기술사업투자조합	444	794	522	569	525	△7.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으로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이 현행법 시행령¹⁾에 규정된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에서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67개 기금으로 확대되고 출자한도가 10%에서 15%로 상향되면,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법정기금을 활용한 투자재원이 90조 9,853억원에서 143조 2,526조원 (52조 2,673억원 증, 57.4%)으로 증가²⁾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 회수 시장 침체 등으로 위축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고 AI 등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 발굴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금관리주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에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각 기금은 고유의 설치목적과 자산운용지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³⁾, 획일적인 벤처투자 의무화는 기금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단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기금의 경우 통상 8년~10년 운용⁴⁾되는 벤처펀드 출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2) (현행) 909조 8,531억원*10% → (개정) 955조 174억원*15%

3) 「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조기 청산이 가능하지만 평균 IPO 소요기간(2023년 기준 15.5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을 감안할 필요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민간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벤처투자 대상 기금의 확대와 투자비율 상향 필요성에 동의하나, 기금별 상이한 운용여건과 자산운용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장관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요청 시 기금관리주체의 이행의무보다는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59

IV. 참고자료

1

법정기금 운용규모 및 여유자금 현황 ('25 예산 기준)

(단위: 억원)

법정 기금	추가 기금 (√ 표시)	운용자산	여유자금
67개	23개	9,550,174	2,979,573
사회보험성기금(6개)			2,807,753
고용보험기금		276,955	83,842
공무원연금기금		337,737	54,550
국민연금기금	* 개별법에 투자근거	1,775,695	1,282,790
군인연금기금		46,052	2,2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37,133	72,62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34,181	85,505
금융성기금(8개)			332,781
기술보증기금		33,080	14,64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651	17,43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11	10
무역보험기금		57,807	51,20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9	6,787
신용보증기금		115,125	67,26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496	9,43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092	32,013
계정성기금(5개)		4,609,772	826,853
공공자금관리기금		3,048,300	892
공적자금상환기금	√	64,384	23
복권기금	√	88,685	8,407
양곡증권정리기금		5,509	260

법정 기금	추가 기금 (√ 표시)	운용자산	여유자금
외국환평형기금		1,402,894	817,271
사업성기금(48개)		1,799,868	372,378
과학기술진흥기금		1,986	935
관광진흥개발기금		17,142	4,423
국가유산보호기금	√	1,690	117
국민건강증진기금		45,405	2,565
주택도시기금		1,033,915	232,018
국민체육진흥기금		30,372	5,916
국유재산관리기금	√	34,820	10,467
국제교류기금	√	1,059	292
군인복지기금		10,118	2,764
근로복지진흥기금		5,661	2,510
금강수계관리기금	√	1,908	685
기후대응기금	√	26,217	2,46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2,376	128
남북협력기금		14,438	94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978	3,92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4,059	3,553
농지관리기금		23,289	3,024
대외경제협력기금		23,527	291
문화예술진흥기금		5,777	98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04,062	61,909
방송통신발전기금		8,705	92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449	480
보훈기금		6,962	4,88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3,903	2,557
사학진흥기금		5,650	246

법정 기금	추가 기금 (√ 표시)	운용자산	여유자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2,352	374
석면피해구제기금	√	623	14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70,860	-
수산발전기금		8,204	19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1,491	48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자불기금	√	31,045	1,094
언론진흥기금	√	508	212
양성평등기금		8,410	38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1,697	796
영화발전기금	√	937	249
원자력기금		6,432	3,106
응급의료기금		6,401	274
임금채권보장기금		9,142	2,848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2,592	53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4,826	1,93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1,829	5,457
전력산업기반기금		38,752	3,241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	44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5,595	-
지역신문발전기금	√	100	12
청소년육성기금		1,714	79
축산발전기금		10,254	757
한강수계관리기금		5,626	754

주1: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

주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폐지되었으나 현행법 시행령에 미반영 상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